

남북법제 이슈페이퍼

2020-9월 호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목 차

■ 북한 과학기술 관련 법제 분석

I. 연구의 필요성	1
II.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동향	2
III. 북한 「과학기술법」 분석	4
IV. 김정은 정권에서 제정된 과학기술 관련 부문법 분석	8

북한 과학기술 관련 법제 분석

I. 연구의 필요성

- 북한은 김일성 정권부터 사회주의 건설과 자립노선의 기초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해 왔음. 김정일 정권에는 제1차 과학기술 발전 5개년 계획(1998년~2002년)을 시작으로 1999년을 ‘과학의 해’로 지정하였고, 1990년대 중후반부터는 식량난과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자 경제난을 타개하고 내부적 결속력을 공고히 하고자 ‘강성대국전략’과 ‘과학기술중시정책’을 추진하였음¹⁾
-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는 체제 유지 및 경제난 해소를 위해 김정일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의 기본노선을 계승하여 더욱 강화·발전시켰음. ‘사회주의 강국건설’이라는 목표 아래에 과학기술과 정보화를 강조하여 과학기술의 일체화 정책을 계승하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통한 ‘경제강국’을 추진함
- 제4차 국가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2013년~2017년)에서 핵심 분야를 조정하여 먹는 문제와 에너지 문제 해결 및 지식경제 육성에 필요한 첨단기술을 더욱 강화하였고,²⁾ 2013년 11월에 열린 제9차 전국과학자기술자대회에서 과학기술계의 핵심 과제는 먹는 문제와 에너지 문제 해결이며 첨단산업과 국방과학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³⁾ 최근에 들어서는 2019년에 ‘자립경제발전의 기본 동력은 인재와 과학기술’이라는 주장 아래 과학과 교육을 강조하며 과학기술발전에 기초한 지식경제 강국건설이라는 발전전략을 내세웠으며 2020년에는 ‘자력부강, 자력번영’을 목표로 과학기술중시정책을 시행하기도 하였음
- 또한 북한은 이러한 정책 추진과 함께 과학기술중시정책의 핵심 분야와 관련된 다수의 부문법을 정비하기도 하였음. 2013년에는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과학기술법」을 개정하였고, 「우주개발법」과 「작물유전자원관리법」을 새롭게 제정하였음. 특히 「우주개발법」은 2012년 우주개발 5개년 계획 실시 이후 제정되었고 「작물유전자원관리법」은 2013년 제4차 국가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실시 이후 제정되었는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도가 미비한 분야가 정비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1) 이춘근,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동향”, 『북한』 통권 제568호, 2018, 68면.

2) 이춘근·김종선, “북한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시사점”, 『STEPI Insight』 제173호, 2015, 9면.

3) 이춘근·김종선, “북한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시사점”, 『STEPI Insight』 제173호, 2015, 5면.

- 이러한 북한의 과학기술중시정책과 법제도 정비는 향후 북한의 경제난 극복과 경제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북한의 변화는 남북교류협력의 방향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됨
- 이에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동향과 관련 법제 중 기본법인 북한의 「과학기술법」, 과학기술 관련 부문법 중 김정은 정권에서 새롭게 제정된 「우주개발법」 및 「작물유전자원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함

II.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동향⁴⁾

1. 헌법적 근거

-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27조는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 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50조는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운다”고 하고 있고, 제51조는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율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고 각각 규정함
- 북한헌법에 규정된 과학기술 관련 조문을 근거로 하여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 기조를 정리하면, ①기술혁명의 계속적인 추진, ②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 강화, ③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운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2. 과학기술기반의 정비(1945년-1960년)

- 해방 직후부터 6.25 전쟁기간 중의 과학기술정책은 일제하에서 일본인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가동되던 각종 산업시설을 재가동하는데 필요한 내부기술자들

4) 본 이슈페이퍼의 해당 목차는 북한정보포털(nkinfo.unikorea.go.kr)과 2020년 통일부에서 출간된 『북한의 이해』를 참조하여 요약·작성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북한정보포털(nkinfo.unikorea.go.kr)과 『북한의 이해』 참조.

을 확보하고 이들을 전문분야별로 재배치하는데 목표를 두었음

- 이러한 기조로 1946년에 ‘기술자 확보에 관한 결정서’를 발표하였으며 1948년에 국가기술자격심사위원회를 신설하기도 하였음. 또한 1956년에는 소련과 연합하여 ‘핵연구소 조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1960년에는 당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를 개최하여 1960년대 이후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결정하였음

3. 3대 기술혁명의 추진(1961년-1977년)

- 북한은 1961년 9월 제4차 당대회에서 제1차 7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음. 그 내용은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자체 부존자원에 입각한 자립적 공업체제 확립에 과학역량을 집중하며, 새로운 과학분야의 개척과 원자력을 비롯한 최신 과학 연구성과들을 생산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이었음
- 또한 과학기술 연구의 세부목표로 무연탄에 관한 연구, 산소열법에 의한 카바이드 생산 방법 및 갈탄의 고온 건류와 같은 과제의 완전해결, 방사선 초음파, 고주파 등의 연구 및 이를 생산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4. 주체화 · 현대화 · 과학화의 추진(1978년-1994년)

- 1978년 북한은 제2차 7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주체화 · 현대화 · 과학화 정책을 추진하였음. 이에 “과학연구사업을 앞세워 인민경제의 과학화를 다그치는 것”과 “기술혁명을 심화 발전시켜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제시하였음
- 세부목표에서는 공업의 주체성 강화를 위해 연료 및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 북한실정에 맞는 현대적인 기계설비 제작을 위한 기계공학의 연구발전, 과학연구여건강화 등을 추진하였음

5. 과학기술중시사상 표방(1995년-현재)

- 북한은 1991년 중장기 계획인 ‘2000년 과학기술발전 전망목표’를 발표하였음. 이에 2000년까지 기초과학 발전토대구축, 컴퓨터 · 원자력 이용 등 첨단과학기술 발전, 금속 · 전자 · 기계공업, 경공업, 농업 등 산업의 전반적인 부문에서 과학기술발전 등을 제시하였음

- 이후 김정은 정권에는 정권에 들어서는 과학자와 기술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2013년에는 과학기술 관련 기본법인 「과학기술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음⁵⁾

Ⅲ. 북한 「과학기술법」 분석

1. 「과학기술법」 개요

- 북한의 「과학기술법」은 과학기술발전계획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과학기술심의와 보급,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 과학기술인재관리,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조건보장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 1988년 제정되었음. 이후 1999년에서 2013년까지 총 6차례 수정 및 수정보충을 거쳤음. 특히 2013년에 이루어진 전면개정은 김정은 정권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의지로 평가할 수 있음
- 「과학기술법」은 총 8개의 장과 8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제1장 과학기술법의 기본, 제2장 과학기술발전계획, 제3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제4장 과학기술심의와 보급, 제5장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 제6장 과학기술인재의 관리, 제7장 과학기술사업조건보장, 제8장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

2. 「과학기술법」의 주요 내용

1) 과학기술법의 기본(제1장)

- 제1장에서는 「과학기술법」에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중시원칙(제2조)을 제시하고 1978년 이후 목표로 하고 있는 주체화·현대화·과학화원칙(제5조)이 명시되어 있음
-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원칙(제7조), 인재양성에 관한 원칙(제8조) 등도 명시되어 있음. 특히 경제기여의 원칙과 인재양성의 원칙이

5) 북한의 과학기술을 토대로 한 산업발전은 중국에서 수입한 기계설비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는 기계설비의 국산화도 강력히 추진되었다. 북한의 국영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산소비재 공급이 크게 늘어나고 제품의 질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있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이 과학기술중시정책과 산업정책이 결합된 공장의 국산화정책을 추진한 결과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석진, “북한 과학기술정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3월호, 2020, 4면 참조.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북한이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과학인재의 양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 과학기술발전계획(제2장)

- 제2장에서는 과학기술발전계획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국가계획기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 및 기관, 기업소, 단체들로 하여금 과학기술발전전략과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실행하도록 하였음(제10조)
- 또한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심의비준, 시달에 관한 규정(제16조),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조절변경(제17조), 과학기술발전계획의 등록, 실행(제18조)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이러한 과학기술발전계획의 명시는 북한 과학기술의 체계적인 발전에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3)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제3장)

- 제3장에서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연구개발의 기본요구로 주체화·현대화·과학화의 실현은 필수적으로 하였음(제22조)
- 또한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제23조), 응용과학기술의 연구개발(제24조), 기초과학의 연구(제25조) 등을 맡게 하였음

4) 과학기술심의와 보급(제4장)

- 제4장에서는 과학기술심의와 보급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로 하여금 과학기술을 심의하고 보급하도록 하였음(제32조). 또한 과학기술심의 및 도입기관의 조직 구성(제33조)과 그 임무(제34조)를 명시하였음
- 이외에도 과학기술의 심의(제35조)와 등록(제36조), 과학기술자료의 보급(제39조), 중요과학기술의 도입(제40조) 등을 규정하였음

5)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제5장)

- 제5장의 경우 2013년 「과학기술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새로이 도입됨. 그 내

용으로는 과학기술과 경제를 결합시켜 지식경제 강국건설을 하고자 하는 북한의 의지를 담고 있음(제42조)

- 구체적으로 첨단산업과 첨단기술개발구의 창설(제43조)과 우대(제44조), 생산과 경영관리의 과학화(제45조), 기술개진 및 현대화계획의 작성(제51조)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경제발전을 꾀하려는 의지가 법조문에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6) 과학기술인재의 관리(제6장)

- 제6장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인재를 계획적으로 양성시키고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와 같은 장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김정은 정권에서 과학기술 관련 인재의 양성을 핵심 과제로 생각한다는 것임
- 이에 과학기술인재의 양성(제57조), 기술자, 기능공양성(제58조), 핵심과학기술인재의 양성(제59조)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이와 같이 인재의 양성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 별도의 장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북한이 과학기술 발전에서 인재의 중요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7) 과학기술사업조건보장(제7장)

- 제7장에서는 과학기술사업조건보장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이에 과학기술발전자금보장(제67조), 과학기술연구기지강화(제68조), 현대적인 과학연구설비의 공동리용(제71조), 과학자, 기술자의 우대(제73조)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과학기술사업조건보장의 보장에는 과학자의 복지 및 연구인프라 조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과학기술 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세부적인 조문을 「과학기술법」에 별도로 명시해 놓은 것은 북한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나타냄

8)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제8장)

- 제8장은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체계와 감독통제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이에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임무(제75조), 과학행정지도기관의 임무(제76조),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감독통제(제78조), 행정적책임(제81조), 형사적책임(제82조)

조) 등이 명시되어 있음

3. 「과학기술법」의 특징

- 「과학기술법」은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기본 법령이라 할 수 있으며 그 특징은 아래와 같음
- 첫째, 과학기술정책의 법제 반영이 지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북한은 해방 이후 과학기술정책을 통해 과학기술기반을 정비하기 시작하였으며 여러 해에 걸친 계획을 추진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설계하였음. 하지만 과학기술정책의 설계와는 달리 「과학기술법」은 1988년에서야 채택되어 다소 늦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특히 주체화·현대화·과학화의 원칙은 북한에서 1978년부터 추구했던 것인데 2013년에 들어서야 법제화되었다는 점은 정책의 법제화 과정이 늦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둘째, 김정은 정권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음. 김정은 정권은 집권 이후 계속해서 과학기술 발전을 토대로 다양한 산업발전을 꾀하면서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하였음.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기술법」 제5장에서는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과 관련한 장을 분리하여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장은 2013년에 「과학기술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장임. 하나의 장에서 과학기술과 경제 결합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과학기술 발전을 중심으로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김정은 정권의 의지가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셋째, 현실과 법령 사이의 괴리감이 있음. 「과학기술법」에서는 제4장에서 과학기술심의회와 보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의 국내외 선전, 보급, 유통, 도입 및 수출입에 관한 내용이 주요 내용임. 하지만 북한은 「과학기술법」에서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면서도 세계의 기술을 배우기 위한 개방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음. 즉, 후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필수 요소가 될 수 있는 이미 있는 기술의 모방, 도입, 응용이 제외되고 있음. 이러한 면은 「과학기술법」에서 과학발전을 위한 요소를 명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계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장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됨. 이에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은 적극적인 대외 경제교류를 수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⁶⁾
- 넷째, 인재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음. 김정은 정권에서는 ‘보통교육’을 강화하면서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목표로 하여 과학기술과 정보화를 꾸준히 천명하고 있음. 이러한 김정은 정권의 의지에 의해 2013년과 2016년

6) 김석진, “북한 과학기술정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3월호, 2020, 12면.

에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으며 2019년에는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여 국가의 과학기술인재 육성(제46조)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기도 하였음. 이에 관한 북한의 인재양성 중요성은 「과학기술법」에도 반영되어 제6장에 과학기술인재의 관리에서 명시하고 있음

IV. 김정은 정권에서 제정된 과학기술 관련 부문법 분석

1. 북한 「우주개발법」 분석

1) 「우주개발법」 개요

-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시작된 2012년에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였음. 이후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국가우주개발국(National Aerospace Development Administration: NADA)을 신설하고 「우주개발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인 우주개발 사업을 시작하였음
- 북한 「우주개발법」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3호로 채택되었으며, 장·절의 구분 없이 총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우주개발법」의 주요 내용

(1) 총칙 조문⁷⁾

- 이 법은 우주개발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나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고 법의 사명을 규정하면서(제1조), 인공지구 위성과 같은 우주기구와 그 운반수단의 설계, 제작, 조립, 발사, 지상관제 및 운영질서를 규제한다고 하여 법의 규제대상을 규정하고 있음(제2조)
- 또한 우주개발의 목적은 우주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수적인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며, 우주를 평화적 목적으로 개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3조)

7) 북한의 「우주개발법」은 별도로 장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북한 「법제정법」상 법 작성의 원칙에 따라 임의로 총칙조문과 각칙조문을 분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 「법제정법」 제66조(총칙조문) 총칙은 법규범들에 대한 해석의 정확성과 동일성, 법규범들의 유기적인 동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법 문건의 원칙적이며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법조문이다.

총칙에서는 해당 법문건의 사명(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 원칙 같은 것을 규정한다.

(2) 각칙 조문⁸⁾

-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은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제4조), 국가의 종합적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계획을 작성하고 우주활동을 감독, 통제하는 등의 임무(제5조)를 수행하는 것 이외에 우주활동에 대한 승인(제7조), 우주개발계획의 작성(제11조), 우주기구 설계에 대한 심의, 승인(제12조), 우주기구의 발사와 관련한 통보(제15조), 우주하부구조의 건설(제16조), 발사한 우주기구의 안전보장(제17조), 발사한 우주기구의 등록(제18조), 사고 조사 및 구조, 피해보상(제19조)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우주개발기관과 기업소는 실용위성과 그 운반수단들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고 있고(제6조), 국가는 우주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제9조) 우주개발분야의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를 양성하며(제10조), 평등과 호혜, 호상보완의 원칙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 우주개발분야에서 협조(제20조)하도록 하고 있음. 이외에도 국가는 우주개발분야에서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고(제21조), 국제법을 존중하며(제22조), 우주활동 분야에서 선택성과 이중기준의 적용, 우주의 군사화를 반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23조)

3) 「우주개발법」의 특징

- 「우주개발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첫째, 우주개발사업의 대표기관으로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고 있음.⁹⁾ 이 법은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이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한다고 하며(제4조), 종합적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계획 작성, 우주활동의 감독·통제, 하부구조건설 지도, 우주기구와 운반수단의 제작·조립·발사지도, 우주활동의 안전보장 등의 임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제5조)

8) 북한 「법제정법」 제67조(각칙조문) 각칙은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당사자들이 지닐 권리와 의무, 법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조문이다.

각칙에서는 법적권리와 의무, 당사자, 대상, 법적책임, 법률사실에 대하여 빠짐없이 명확하게 확정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9) 북한은 이 법 신설과 동시에 국가우주개발국을 신설하였는바, 이는 기존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하여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자 제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명칭의 기구를 창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국제우주연맹에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와 같은 기구라고 강조하였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이에 동의함에 따라 국제우주연맹은 국가우주개발국의 연맹 가입 승인을 철회하였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다. KBS NEWS, “국제우주연맹, 북한 우주개발국 가입 승인 철회”, 2015. 10. 2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68070>(검색일: 2020. 9. 14.); 연합뉴스, “제2차 우주개발 5개년 계획 소개한 북한…“평화적 이용” 부각”, 2020. 04. 02.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2065700504?input=1195m>(검색일: 2020. 9. 14.) 참조.

- 둘째,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 법은 우주개발분야의 국제협조(제20조), 국제법 존중(제22조), 선택성과 이중기준의 적용, 우주의 군사화 반대(제23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주활동 과정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조사 및 구조, 피해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제19조). 이 같은 규정은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UN 결의에 따라 체결된 우주 관련 다자간 조약들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임.¹⁰⁾ 다만,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우주개발법」 제정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하여 우주개발 활동이 주권국가에게 인정되는 평화적 우주개발 권리의 행사라고 주장하기 위한 의도이며, 모든 국가는 인류 공동의 재산인 우주를 개발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제법적 기준을 준수한다면 북한도 우주를 개발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 위함이라는 견해가 있음¹¹⁾
- 한편, 이 법은 우주기구 및 운반수단의 제작, 운영에 관한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어 법 규율 대상의 다양성이 부족함. 이는 남한의 「우주개발 진흥법」이 우주개발에 관한 계획, 위성정보 활용 및 우주위험대비 등에 관한 계획, 운석의 등록, 민간 우주개발사업의 지원, 우주개발 등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실태조사, 비밀 엄수 의무 등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음
- 또한 형식면에서 총칙 및 각칙 조문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음. 북한은 2011년 「법제정법」을 제정하여 법 작성과 관련한 기준을 법제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제정법」 제정 이후 제·개정된 북한의 부문법은 대부분 「법제정법」에서 정한 형식적 기준을 따르고 있음. 그러나 이 법의 경우 「법제정법」상 법 작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¹²⁾

10) UN 결의에 따른 우주 관련 국제조약은 우주조약(1967), 우주구조반환협정(1968), 우주손해책임조약(1972), 우주물체등록조약(1976), 달조약(1979) 등이 있으며, 남한의 「우주개발 진흥법」에서도 우주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규정, 우주물체의 등록, 우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우주비행사의 구조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최은석, “북한의 우주개발계획분석 -법제도적 시각을 중심으로-”, 『군사논단』 제73호, 2013, 223면 참조.

11) 경찰대학 산학협력단, 『2012년 이후 제·개정된 북한법령 연구』, 통일부, 2017, 92-93면 참조.

12) 「법제정법」 이후 신규 채택된 법들은 「법제정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적 측면을 잘 이행하고 있다. 「법제정법」 제정 이후에도 그 형식 및 체계를 따르지 않은 법령이 발견되기는 하나, 수적으로 매우 일부에 불과하여 「법제정법」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실수로 판단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가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북한의 입법체계 및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19, 79-80면 참조.

2. 북한 「작물유전자원관리법」 분석

1) 「작물유전자원관리법」 개요

- 북한 「작물유전자원관리법」은 2013년 10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96호로 채택되었음. 총 4장 3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물유전자원관리법의 기본(제1장), 작물유전자원의 등록(제2장), 작물유전자원의 보존과 이용(제3장),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제4장)로 이루어져 있음
- 북한은 농업생산 기술력 증대를 통해 식량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업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물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제를 정비한 것으로 보임

2) 「작물유전자원관리법」의 주요 내용

(1) 작물유전자원관리법의 기본(제1장)

- 제1장에서는 이 법은 작물유전자원의 등록과 보존,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을 개선하며 농업생산을 늘이는데 필요한 작물유전자원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한다고 하며(제1조), 작물유전자원이란 작물의 종 또는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유전물질이 들어있는 자원으로 작물의 형질별 특성을 재생시키며 그의 유전적 특성을 변화시키거나 개량하는데 리용할 수 있는 작물의 유전적 원천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음(제2조)
- 또한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에 대한 투자원칙(제3조), 작물유전자원의 등록, 보존과 이용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 제5조), 작물유전자원관리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 규정(제7조)을 비롯하여 국제조약의 효력규정을 두어 북한이 가입하였거나 승인한 조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 있음(제8조)

(2) 작물유전자원의 등록(제2장)

- 제2장에서는 농업과학연구기관은 새로운 작물유전자원을 수집, 육성하고(제9조), 검역을 하여 합격하지 못한 다른 나라의 작물유전자원은 들여올 수 없도록 하고 있음(제10조)
- 또한 새로 수집하거나 육성한 작물유전자원의 등록 등에 관한 절차(제11조, 제12조)와 작물유전자원의 보존 및 폐기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제14조,

제15조), 국가적 의의가 있는 작물유전자원은 국가작물유전자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제16조)

(3) 작물유전자원의 보존과 리용(제3장)

- 제3장에서는 작물유전자원을 보존하는 기관(제17조), 보존시설의 관리(제18조), 작물유전자원의 손상, 부패, 변질과 같은 피해방지 및 보안대책 마련(제19조)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작물유전자원은 형질별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갱신 및 검사하도록 하고(제20조, 제21조), 작물유전자원의 보장, 이용 원칙(제22조, 제23조)을 비롯하여 작물유전자원 연구에 필요한 토지와 시설의 보장(제26조), 시험포전보호구역의 지정(제27조), 비밀엄수 및 작물유전자원의 반출(제29조, 제30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4)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제4장)

- 제4장에서는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이 하며(제31조), 감독통제는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 기관이 하도록 하고(제34조), 작물유전자원의 검정, 보존, 이용 등에 있어 위반이 있는 경우 행정적 책임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6조, 제37조)

3) 「작물유전자원관리법」의 특징

- 「작물유전자원관리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첫째, 작물유전자원의 등록과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지도통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포괄적인 작물유전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음. 남한의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크게 총칙(제1장),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등(제2장), 농업생명자원의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제3장),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반구축(제4장), 벌칙(제7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세부 규정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종합적인 작물유전자원관리 체계에 관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둘째, 작물유전자원 보존연구기관에 관한 규정을 두어 보존과 관리에 관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음. 작물유전자원의 보존은 작물유전자원 보존연구기관이 하며(제17조) 이 기관은 보존시설을 과학기술적으로 관리하고(제18조) 작물 유전

자원의 손상, 부패, 변질 같은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음(제19조). 또한 형질별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원을 갱신 및 검사하며(제21조, 제21조), 작물유전자원의 입출고 및 자료 제출 등의 임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제25조). 이러한 연구기관의 운영을 통해 작물유전자원 보존 임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 셋째, 비밀엄수 및 작물유전자원의 반출 등 규정을 두어 작물유전자원의 불법적인 유출 행위를 차단하고 있음. 농업과학연구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과 관련한 비밀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관련한 자료는 정해진 사람만 취급하며 승인 없이 다른 기관 등에게 보여줄 수 없도록 하고 있음(제29조). 비밀을 누설할 경우 행정처벌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음(제36조제9호). 또한 작물유전자원을 다른 나라에 내보내려 할 경우에는 내각 또는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제30조). 농업 관련 유전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있어 중요한 것은 보존하고 있는 자원의 무분별한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므로 북한 내에서 보존하고 있는 자원의 불법적인 국외 유출 차단 규정을 두는 것은 자원주권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¹³⁾
- 다만, 이 법은 작물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음. 생물유전자원 보존에 필수적인 것은 다양한 자원을 보존하는 것과 자원을 감소하거나 멸실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임.¹⁴⁾ 따라서 남한의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속가능한 이용원칙 및 자원의 다양성 확보에 관한 내용을 법의 목적과 국가 등의 책무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법의 사명과 세부규정 등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외에도 작물유전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 체계 수립 관련 규정이 부재하므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화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¹⁵⁾

13) 오윤석, “농업유전자원법에 관한 고찰”, 『농촌경제』 제30권 제6호, 2008, 102면 참조.

14) 오윤석, “농업유전자원법에 관한 고찰”, 『농촌경제』 제30권 제6호, 2008, 97면, 103면 참조.

15) 오윤석, “농업유전자원법에 관한 고찰”, 『농촌경제』 제30권 제6호, 2008, 102면 참조.

참고문헌

1. 단행본

이석기·변학문·나혜선,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 및 산업정책』, 산업연구원, 2018.
장명봉, 『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2018.
한명섭, 『통일법제 특강』, 한올아카데미, 2019.
통일부, 『북한의 이해』, 2020.

2. 논문

권태진, “남북한 농업기술협력 추진 방향”, 『KERI 북한농업동향』 제9권 제1호, 2007.
김석진, “북한 과학기술정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3월호, 2020.
오윤석, “농업유전자원법에 관한 고찰”, 『농촌경제』 제30권 제6호, 2008.
이규창, “북한 과학기술법제의 동향과 남북 과학기술법제 통합의 방향 사항”, 『북한과학기술연구』 제10집, 2015.
이춘근,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 경로와 시사점”, 『Science & Technology Policy』, 2015.
이춘근,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동향”, 『북한』 통권 제568호, 2019.
이춘근·김종선, “북한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시사점”, 『STEPI Insight』 제173호, 2015.
최은석, “북한의 「우주개발법」 제정과 전략로켓”, 『군사논단』 제90호, 2017.
최은석, “북한의 우주개발계획 분석 -법제도적 시각을 중심으로-”, 『군사논단』 제73호, 2013.
허성기·노태환, “북한의 농업과학기술-북한의 식량작물 생명공학 기술 개발”, 『KREI 북한농업동향』 제65권 제1호, 2019.

3. 연구보고서

경찰대학 산학협력단, 『2012년 이후 제·개정된 북한법령 연구』, 통일부, 2017.

4. 기타

북한정보포털(nkinfo.unikorea.go.kr)